

보도시점 2024. 8. 26.(월) 11:00
8. 27.(화) 조간

배포 2024. 8. 26.(월) 09:00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 확대

-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기종에 추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하여 보험 적용 기종을 확대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이하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현재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 기종(12개)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SS분무기,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드론),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우더, 광역방제기, 농업용 굴착기, 베일러

농기계보험은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상품 개선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매년 1만 2천대 이상 증가하는 등 보험 가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가입대수 : ('19) 102천대 → ('20) 116 → ('21) 128 → ('22) 141 → ('23) 153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능이 유사한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농기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지난 7월에 호우피해 현장 방문 시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기계보험 가입 기종을 확대하게 되었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사고 외에도 침수에 따른 농기계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며,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의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은 8월부터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농기계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송미령 장관은 “농기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은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인의 실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업용 고소작업차 및 농업용 리프트 설명자료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재원 (044-201-1791)
		담당자	사무관	이교남 (044-201-179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규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농업기계의 범위)

농기계명	범 위
<p>농업용 고소작업차</p> 	<p>과수의 적과(열매 솟아내기), 가지치기 및 수확 등의 농작업을 위해 작업자의 탑승과 작업대에 주행 및 승하강 등의 조작장치를 갖춘 자주식 작업차(스피드 스프레이어 등에 장착하여 승하강 할 수 있는 과수용 작업대 포함)</p>
<p>농업용 리프트</p> 	<p>평탄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선반이나 작업대 등에 탑승하지 않고 농산물이나 농자재 등을 이동시키거나 상하차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자주식 또는 트랙터 부착식 리프트(농산물 상하차운송기)</p>
<p>농업용 동력운반차</p> 	<p>최대출력 18kW 이하의 농업용엔진 또는 농업용전동기, 적재함과 주행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주식 운반차(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엔진으로 사용되거나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동기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p> <p>가. 승용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고주행속도: 30km/h 이하 2) 적재정량: 200kg 이상 10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1.0m² 이상 <p>나. 보행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고주행속도: 7km/h 이하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0.5m² 이상 <p>다. 자율주행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고주행속도: 30km/h 이하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0.5m² 이상